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5. 3. 화성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 5. 7.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4. 5. 20.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최호범 도로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화성형 공공 전기자전거 구축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감소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운영방식(안 제5조의2)
-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기준(안 제5조의3)
- 공영자전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안 제5조의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박만규 전문위원)

가.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운영방식,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기준, 공영자전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공영자전거 위탁 사업은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개인에게 까지 위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라. 또한 공영자전거 사업 추진시 재원 대부분이 LH 협약금인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오문섭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5. 3. 오문섭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5. 7.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4. 5. 20.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오문섭 의원)

가.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전을 계속하려는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본 조례안은 운전을 계속하려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운전 능력 저하로 야기되는 교통사고 예방 관련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배려한 교통문화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데 제정 취지가 있음.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박만규 전문위원)

가.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 다.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 배려 문화 확산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 라. 이외에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채덕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5. 3. 임채덕 의원 외 5인
- 나. 회 부 일 자 : 2024. 5. 7.
-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4. 5. 20.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임채덕 의원)

가.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증대하고, 2024년 7월 전면 시행되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의 원활한 통합운영을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중 감독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가함. (안 제4조, 제8조)
-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박만규 전문위원)

- 가.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광역이동서비스의 통합운영을 위해 미비한 규정을 일부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반영된 용어 및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나.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자문에 대한 사항 중 이동지원센터의 **감독**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영**에 관한 것은 추가하는 사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이용대상자·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조례 개정을 통해 2024년 7월 경기도 광역이동서비스 전면 시행에 따른 이용대상자의 혼란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용요금에 대한 세부기준을 운영지침으로 정해 기존 이용자 부담이었던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비와 관련한 문제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계철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5. 3. 이계철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5. 7.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4. 5. 20.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이계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13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화성 특례시 출범에 앞서 물류운영체계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3조)
-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9조)
-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사항 (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박만규 전문위원)

가. 본 조례안은 특례사무 이양에 대비하여, 물류단지 입주 수요 타당성 등 실수요검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리 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물류단지 정책 결정을 위한 사항으로,

나. 주요 내용으로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다. 조례안 검토결과, 물류단지 입주수요 및 수행능력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지정요청자의 금융 및 재무부분 사업수행 능력 등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평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조례시행일의 적합여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이외에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계철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5. 3. 이계철 의원 외 8인
- 나. 회 부 일 자 : 2024. 5. 7.
-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4. 5. 20.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이계철 의원)

가. 제안이유

- 행복택시 운영 사업의 재정건전성 및 사업 지속을 위하여 이용요금 및 이용대상의 범위 등을 조정하여, 신규마을 지정의 기반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용대상자 조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1항)
- 이용요금의 근거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박만규 전문위원)

- 가. 본 개정조례안은 행복택시 이용요금 및 이용대상의 범위 등을 조정하여, 신규 마을 지정의 기반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나.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대상자 조정에 관한 사항, 이용요금의 근거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 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이용대상자 및 운행 마을 조정에 대한 규정 마련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기대되며, 운행요금 현실화로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계철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5. 3. 이계철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5. 7.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4. 5. 20.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이계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입지를 제한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오염배출시설이 미설치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등)의 입지는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계획관리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이 입지 불가능하도록 건축제한 강화 (안 별표 19)
- 자연취락지구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등)이 입지 가능하도록 건축제한 완화 (안 별표 2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박만규 전문위원)

가.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나.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입지 불가능하도록 제한을 강화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입지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 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의 제공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입지를 제한 하는 것과,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주민의 소득 및 경제활동 증대를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라. 그 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견 제시의 건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5. 3. 화성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 5. 7.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4. 5. 20. 의견채택)

2. 제안요지설명(이재국 도시정책관)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화성시 GB해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내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화성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 화성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분	화성시 도시계획시설							
	소 계 (시설수)	집행시설 (시설수)	미집행시설					
			소계		10년미만		10년이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총 계	7,488	6,817	671	6,754,770.6	195	2,582,504.8	476	4,172,265.8
교통시설	5,214	4,734	480	2,229,802.7	135	1,712,951.7	345	516,851.0
도로	4,863	4,415	448	2,198,456.7	126	1,685,075.7	322	513,390.0
주차장	280	248	32	31,337.0	9	27,876.0	23	3,461.0
기타	71	71	-	-	-	-	-	-
공간시설	1,501	1,429	72	869,836.4	51	753,557.0	21	116,279.4
공원	506	473	33	316,846.3	25	268,703.0	8	48,143.3
녹지	638	603	35	548,540.1	24	481,236.0	11	67,304.1
기타	357	353	4	4,450.0	2	3,618.0	2	832.0
유통공급시설	77	74	3	11,649.5	1	4,324.0	2	7,325.5
공공문화체육시설	394	383	11	141,615.8	4	84,385.4	7	57,230.4
방재시설	239	136	103	3,480,957.5	2	6,378.0	101	3,474,579.5
보건위생시설	8	8	-	-	-	-	-	-
환경기초시설	55	53	2	20,908.7	2	20,908.7	-	-

※ 도시계획시설 개소수의 경우 2023.9.4. 기준 KGIS 시스템에 등재된 시설 개소수로 하였으며, 미집행시설 면적은 미집행구간에 대한 면적만 표기하였음

※ 미집행시설 개소수의 경우 집단취락지구 내 폐지(43개소)시설을 반영하였음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GB해제지구		집단취락지구		지구 외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총 계	671	8,882,766.9	211	414,176.0	63	56,460.0	397	8,412,130.9
교통시설	480	4,357,799.0	211	414,176.0	63	56,460.0	206	3,887,163.0
도로	448	4,326,462.0	210	413,630.0	41	53,545.0	197	3,859,287.0
주차장	32	31,337.0	1	546.0	22	2,915.0	9	27,876.0
공간시설	72	869,836.4	-	-	-	-	72	869,836.4
공원	33	316,846.3	-	-	-	-	33	316,846.3
녹지	35	548,540.1	-	-	-	-	35	548,540.1
기타	4	4,450.0	-	-	-	-	4	4,450.0
유통공급시설	3	11,649.5	-	-	-	-	3	11,649.5
공공문화체육시설	11	141,615.8	-	-	-	-	11	141,615.8
방재시설	103	3,480,957.5	-	-	-	-	103	3,480,957.5
환경기초시설	2	20,908.7	-	-	-	-	2	20,908.7

※ 도시계획시설 개소수의 경우 2023.9.4. 기준 K LIS 시스템에 등재된 시설 개소수로 하였으며, 미집행시설 면적은 미집행구간에 대한 면적만 표기하였음
 ※ 미집행시설 개소수의 경우 집단취락지구 내 폐지(43개소)시설을 반영하였음

2). GB우선해제지 재정비

가. 화성시 GB해제지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분	시설총계		도시계획시설											
			집행시설		미집행시설(실효시기별)									
	소계				부분집행		미집행(실효시기 별)							
			2024년				2026년		2027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계	235	512,721	24	86,478	211	426,243	9	21,152	64	151,762	130	238,673	8	14,656
교통시설	227	491,323	16	65,080	211	426,243	9	21,152	64	151,762	130	238,673	8	14,656
도로	226	490,777	16	65,080	210	425,697	9	21,152	64	151,762	130	238,673	7	14,110
주차장	1	546	-	-	-	-	-	-	-	-	-	-	1	546
공간시설	6	6,119	6	6,119	-	-	-	-	-	-	-	-	-	-
녹지	6	6,119	6	6,119	-	-	-	-	-	-	-	-	-	-
공공문화체육시설	2	15,279	2	15,279	-	-	-	-	-	-	-	-	-	-
학교	2	15,279	2	15,279	-	-	-	-	-	-	-	-	-	-

※ 도시계획시설 개소수의 경우 2023.9.4. 기준 K LIS 시스템에 등재된 시설 개소수로 하였음.

나. GB해제지 해제불가사유

- 경기도 협의 결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추가해제는 어려우며, 향후 추가해제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재지정필요
- 따라서, GB우선해제지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실효시기 도래 이전 사업집행 필요

구 분	경기도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검토결과
재정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제율 110%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0% 초과구역 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불가능 - 53개 GB해제지 중 현재 100% 초과 42개 구역, 110% 초과 11개 구역 - 시설 폐지시 대부분 해제율 110%를 상회함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회가능한 도로가 있거나 현황도로만으로 충분한 경우 검토 가능 보차혼용도로 지정할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미집행시설 도로는 대부분 폐지 시 맹지발생에 따라 폐지가 어려움 보차혼용도로 내 토지소유자 100% 사전동의 불가시 도로해제 불가
공원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주인구 1인당 3㎡ 필수 확보 상기 기준보다 5%이상 추가 확보되도록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에 따른 공원 및 녹지 등 대체시설 지정 필수 - 공원·녹지 확보기준(1인당 3㎡)에 부합하는 구역은 53개소 중 4개소 - 그 외 49개 구역은 재정비시 공원·녹지 신규 확보 필요
기타 의견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환경개선, 도시의 균형적 성장 등 GB우선해제지 지정의 근본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의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의지 등 지자체 노력 필요 - GB우선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조건으로 지정된 구역임 - 구역해제는 불가능하며, 도시계획시설 실효시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 필요

3). 집단취락지구 재정비

가. 화성시 집단취락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도시계획시설		집행시설		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총 계	105	118,803	42	62,343	63	56,460
교통시설	92	108,282	29	51,822	63	56,460
도로	70	105,367	29	51,822	41	53,545
주차장	22	2,915	-	-	22	2,915
공간시설	12	5,369	12	5,369	-	-
공원	11	5,136	11	5,136	-	-
교통광장	1	233	1	233	-	-
방재시설	1	5,152	1	5,152	-	-
하천	1	5,152	1	5,152	-	-

※ 도시계획시설 개소수의 경우 2023.9.4. 기준 KLIS 시스템에 등재된 시설 개소수로 하였음.

나. 우선해제시설 및 해제기준 검토

- 집단취락지구(23개소) 내 실효시기(2026. 12. 12.)가 도래한 미집행시설의 정비를 통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및 해제 검토기준 수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해제시설 분류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구분	검토기준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여건 상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 관계법령에 의한 입지 및 규모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자연적 제약요소(급경사지)에 의해 설치 불가능한 경우, 지나친 자연·경관의 훼손이 발생할 경우
도 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경사지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하여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 미개설구간에 군부대,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장물이 입지한 경우 • 기존도로 확폭시 단차가 심하여 계단, 옹벽처리가 필요한 경우 • 환경·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지나치게 결과물훼손하거나 과도한 터널계획 등이 필요한 경우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인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이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경우 • 원인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이 폐지 또는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치되어 있는 시설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 부서별 협의의견 우선 반영

라. 우선해제시설

구 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존치시설		우선해제시설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총 계	63	56,460	20	35,883	43	20,577
교통시설	63	56,460	20	35,883	43	20,577
도 로	41	53,545	20	35,883	21	17,662
주차장	22	2,915	-	-	22	2,915

4) 단계별집행계획

가. 단계별집행계획 기본원칙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 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함
- 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점 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시설에 한하여 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하며 해당시설의 실효시기 및 각 사업집행부서의 재정계획을 고려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

나. 단계별집행계획

구분	미집행시설							
	합계		1단계 (3년 이내 시행)		2-1단계 (5년 이내 시행)		2-2단계 (6년 이후 시행)	
	시설수	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사업비 (백만원)
합계	630	2,477,971	244	508,591	10	9,626	376	1,959,754
교통시설	439	1,447,856	227	330,334	10	9,626	202	1,107,896
도로	429	1,435,798	227	330,334	9	9,568	193	1,095,896
주차장	10	12,058	-	-	1	58	9	12,000
공간시설	72	334,158	3	28,045	-	-	69	306,113
공원	33	166,538	3	28,045	-	-	30	138,493
녹지	35	165,403	-	-	-	-	35	165,403
기타	4	2,217	-	-	-	-	4	2,217
유통공급시설	3	2,455	-	-	-	-	3	2,455
공공문화체육시설	11	44,644	1	4,711	-	-	10	39,933
방재시설	103	647,015	13	145,501	-	-	90	501,514
환경기초시설	2	1,843	-	-	-	-	2	1,843

※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미집행시설 개소수의 경우 집단취락지구 폐지(43개소) 및 GB해제지구 금회 정비시 신설 1개소, 화성시 고시 제 2023-726호(2023.9.14.) 신설 1개소를 반영하였음
 ※ 시설별 사업기간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사업비의 경우 시설별 전체 사업비를 기재하였음

다.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계획 기간중 사업비(2024~)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국비	재정적			지방채	공기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지방비					민간투자	공공기여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이후
계			도비	시군비											
합계	2,477,971	-	2,127,117	-	2,127,117	-	-	-	350,854	12,966	156,008	136,176	129,140	23,669	2,020,012
재정	2,127,117	-	2,127,117	-	2,127,117	-	-	-	-	12,966	156,008	135,265	129,096	23,669	1,670,113
금회	1,795,907	-	1,795,907	-	1,795,907	-	-	-	-	12,297	57,696	26,053	22,828	7,720	1,669,313
도로	959,002	-	959,002	-	959,002	-	-	-	-	8,595	-	-	-	-	950,407
공원	46,067	-	46,067	-	46,067	-	-	-	-	152	27,893	-	-	-	18,022
녹지	98,369	-	98,369	-	98,369	-	-	-	-	-	-	-	-	-	98,369
기타	692,469	-	692,469	-	692,469	-	-	-	-	3,550	29,803	26,053	22,828	7,720	602,515
GB해제	319,078	-	319,078	-	319,078	-	-	-	-	669	96,996	102,133	102,531	15,949	800
집단취락	12,132	-	12,132	-	12,132	-	-	-	-	-	1,316	7,079	3,737	-	-
비재정	350,854	-	-	-	-	-	-	-	350,854	-	-	911	44	-	349,899
공공기여	350,854	-	-	-	-	-	-	-	350,854	-	-	911	44	-	349,899

※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미집행시설 개소수의 경우 집단취락지구 실효(43개소) 및 GB해제지구 금회 정비시 신설 1개소, 화성시 고시 제 2023-726호(2023.9.14.) 신설 1개소를 반영하였음
 ※ 재원투입시기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사업비의 경우 시설별 단계별 사업비를 기재하였음

5) 검토의견

- 물리적으로 개설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제하는 사항과, 우리 시의 재정능력, 도시계획시설 필요성 등을 감안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보고 및 의견청취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6) 추진사항

- 2021. 3. 18. :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착수
(주거개발진흥지구, 집단취락지구, GB해제지구)
- 2022. 12. 28. : 주거개발진흥지구 재정비 완료
(화성시 고시 제2022-984호)
- 2023. 9. 4. : 2030년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수립
(화성시 고시 제2023-684호)
- 2023. 11. 15. : 제14회 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집단취락지구 내 장기미집행 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 2023. 12. ~ 2024. 02. : 관련부서 협의

7) 향후계획

- 2024. 5. : 화성시 의회의견청취
- 2024. 6.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박만규 전문위원)

- 가. 본 안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 나. 검토결과, 총 7천4백8십8개소의 도시관리계획시설 중 10년 이상이 경과한 476개소의 장기미집행 시설을 포함하여 총 6백7십1개소의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 하였으나,
- 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하여는 약 3조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함에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시, 우리 시 재정 여건이 면밀하게 검토 되었는지와

라. 시설결정 후 15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실효를 대비한 관리계획은 적절히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마. 관련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1년 또는 2년마다 의회에 그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1.12월 이후 금회 보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에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의회 보고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의견제시

-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 보고 절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의회의 해제권고” 제도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고 시기 및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다 명확한 기준과 수립 목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5. 3. 화성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 5. 7.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4. 5. 20. 의견채택)

2. 제안요지설명(이재국 도시정책관)

가. 제안이유

- 문화재인 만년제와 연계하여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배우며 안녕동 일원의 여가 활동 및 휴양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만년제 주변 부지를 활용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54-1번지 일원
- 용 도 지 역 : 자연녹지지역
- 시설의 종류 : 공간시설[공원(주제공원 - 역사공원)]
- 입 안 내 용 : 공원 신설(A=9,546㎡)
- 입 안 권 자 : 화성시장(문화유산과)
- 사 업 기 간 : 2024년 ~ 2028년
- 사 업 비 : 15,480백만원(시비 1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박만규 전문위원)

- 가. 본 의견청취의 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만년제와 연계하여 시민들이 만년제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여가활동과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결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대상지 반경 2km이내 용전릉, 용주사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인접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북측으로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지 및 아파트 등 고밀도 주거지로 도보권 이용도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 33개소 약 31만6천 제곱미터의 장기미집행 공원 개설을 위하여 약 1천7백억원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여건에서,

라. 부정형적인 구역계 설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교통량이 많아 혼잡한 효행로 1곳의 진출입로 계획에 따른 접근성 등 교통처리 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역사공원의 취지에 맞도록 시설물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지, 만년제 복원사업과의 연계성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 공원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의견제시**

- 만년제의 의미와 가치에 걸맞는 공원시설이 조성 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 부정형에 따른 토지 활용성 저해, 주차장 편중, 차량 혼잡 등 공원활용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년제와의 연계성등을 고려하여 공원 시설의 확장성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부족에 대비하여 도보 접근성을 추가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안전 조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대화된 공원 보다는 만년제의 역사성을 복원하는 공원조성의 취지에 맞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능안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추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5. 3. 화성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 5. 7.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4. 5. 20.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정연송 주택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화성 시민의 약 8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범위 및 금액을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단지별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노후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규모 정비(안 제11조제1항).
 - 지원금액 상향
 - 단지당 1억2천만원
 - 1억2천만원을 말하되, 승강기 대수가 12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대수마다 1천만원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 정비
(안 제5조제2항제12호의2 개정/ 제12호의3, 제12호의4 신설)
 - 입주자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및 신설
 - 1)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낡은 승강기의 교체·유지 및 보수' (확대)
 - 2) '건물의 도색 및 균열·보수' (신설)
 - 3)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 (신설)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정비(안 제10조)
 -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의 단서조항을 개정
'시장이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목적' → '입주자와 사용자 등의 안전 및 공공목적'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박만규 전문위원)

- 가.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및 금액을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단지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 나.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 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보조금 지원규모 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일정부분 해소하여 줄 것으로 판단되나,
- 라. 대단위 아파트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후승강기 교체 보조금의 상한선이 필요 하지는 않는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에 “도색” 이 포함되는 것과 지원대상의 연한은 적정한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